



교육감 규정

번호: A-701

주제: 학교 보건 서비스

항목: 학생

발행: 2021년 3월 25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2년 8월 15일자 교육감 규정 A-701을 갱신하고 대체합니다.

변경 내용:

- 학생 보건 양식, 통지문 기록 관련 정보 및 본 규정에 사용된(섹션 I) 학부모 정의를 갱신한다.
- 3-K 과 pre-k 프로그램, K-12 학교 입학과 함께, 그리고 학생이 입학 후 만 5 세가 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는 종합 의료 검진 양식 제출 요건을 명확히 한다.(섹션 II.A.1).
- 특수교육 위원회에 제출하는 건강 평가는 OSH 의사가 아닌 학생의 주치의가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섹션 II.A.2).
- 학교 대항 스포츠 참여용 신체검사 양식 요건을 갱신한다 (섹션 II.A.2).
- 학생 신장 및 체중 측정 보고 요건을 갱신한다 (섹션 II.B).
- 학생 시력 검사 요건 및 DOHMH 과 DOE 직원의 의무,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요건을 갱신한다 (섹션 II.C).
- 청력 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섹션 I.B, II.C).
- 뉴욕주 필수 예방접종 조항을 갱신하고 뉴욕주 공공보건법 § 2164 에 따른 종교적 사유의 예방접종 예외조항을 삭제하며, DOHMH 예방접종 데이터 기록 시스템을 명시한다 (Section III).
- 신입생 대상 임시 예방접종 요건 및 임시 거주지 기거 학생의 권리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한다 (섹션 III.B).
- 의료적 사유로 인한 예방접종 요건 면제 절차 및 타임라인을 명확히 한다 (섹션 III.C).
- 생후 6 개월에서 59 개월 사이 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뉴욕시 요건을 추가한다 (섹션 III.F).

- 백신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이 창궐하는 시기 중 예방접종 예외조항을 적용 받은 학생들의 제외에 관한 정보를 갱신한다(섹션 III.G).
- 결핵 검사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 교내 및 기타 DOE 프로그램과 활동에서의 학생 투약용 약물 보관, 기록보관 및 투약 시행에 관한 정보, 그리고 편의제공 요청과관련된 정보를 갱신하고 명확히 한다 (섹션 IV.A).
- 에피네프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비상 약물을 학생에게 투여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추가한다 (섹션 IV.B).
- 비상 가정 연락 정보 관련 요건을 갱신한다 (섹션 V.A).
- 911 전화를 포함한 응급처치 및 비상 케어 프로토콜을 갱신한다 (섹션 V.B).
- 학교 자동제동기(AED) 구비 요건을 명확히 한다 (섹션 V.C).
- OSH 의료실 시설, 학교 보건 센터 및 학교 보건센터 치과 프로그램 설치 절차를 명시한다 (섹션 VI).
- 학교 보건 프로젝트 및 연구의 검토와 승인을 담당할 DOE 부서를 업데이트 한다 (섹션 VII).
- 면제 조항을 첨가한다 (섹션 VIII).
- 본 규정 관련 문의 연락처 정보를 갱신한다 (섹션 IX).



교육감 규정

번호: A-701

주제: 학교 보건 서비스

항목: 학생

발행: 2021년 3월 25일

요약

뉴욕시 보건국과 뉴욕시 교육청 공동부서인 학교 보건 담당실은 학교 보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이것이 뉴욕주 교육법, 뉴욕주 공중보건법 및 뉴욕시 건강규정에 부합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 본 교육감 규정은 이러한 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한다.

I. 배경

A. 학교 보건 프로그램

1. 학교 보건 프로그램은 학생 교육 및 발달을 지원한다.
2. 학생 개개인에게 특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뉴욕시 교육청("DOE") 과 뉴욕시 보건국(DOHMH)의 공동 의무이다.
3. 학교 보건 담당실 (OSH)은 DOE 와 DOHMH 의 공동 프로그램으로서 이 두 부서는 학교 보건 프로그램과 정책, 절차를 개발하고 모니터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B. 학생 건강 기록

1. 학생 건강 기록은 학교 보건 서비스 제공자 측에 학생의 현재 및 과거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학생의 웰빙과 학습에 영향을 줄만한 중요한 건강 문제에 관해 교직원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각종 보건 양식 및 통지문 다운로드: <https://infohub.nyced.org/in-our-schools/translations/forms/health-forms-and-notice>. 학생 건강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a. DOE 에서 관리하는 학생 정보 컴퓨터 시스템인 ATS 상의 데이터, 가령 예방접종, 시력 검사, 보건 서비스, 섹션 504 조정 계획 (504 계획), 건강상 주의사항, 의료보험 커버리지 등.

- b. OSH 자동 학생 건강 기록(ASHR), 여기에는 ATS 상의 정보 및 학교 간호사, 의사 및 너스 프랙티셔너 등의 OSH 클리닉 직원이 입력한 추가 정보 포함.
- c. CH205 양식 - 아동 및 청소년 건강 검진 양식.
- d. 약물 투여 양식(MAF) 및 해당될 경우 기타 보건 서비스 양식.
- e. 103S 양식 - 학교 의료 기록, OSH 에서 유지하는 학생 개개인의 건강 기록으로서 여기에는 검사, 치료, 커뮤니케이션 및 처치에 관한 상세 정보 포함.
- f. 104S 양식 - 누적 건강 기록, 여기에는 DOE 학급 교사의 관찰 기록, 각종 검사 및 기타 특정 건강 정보 포함.
- g. 예방접종 증명 및 기타 학생의 예방접종과 관련된 기록.

2. 정보 접근

- a. 학생 건강 기록은 기밀 서류로 분류된다.
- b. OSH 직원은 학생의 학교 활동 참여에 영향을 줄만한 건강정보나 특정한 건강 관련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교장 및 기타 관련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의료기록 기밀보장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 c. ASHR 과 위에 명시한 모든 건강 관련 양식은 OSH 에서 기밀로 유지한다. 학부모는 OSH 에서 유지하는 건강 기록 사본을 얻기 위해 OSH 에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의 부모 외 사람의 건강기록 요청은 의료 기록 기밀유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d.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 보호자,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학생이 18 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한다.

II. 건강 검진

A. 신체 검사

1. 신입생

- a. DOE 3-K 또는 pre-k 프로그램이나 DOE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의료 면허 소지자(의사, 너스 프랙티셔너 또는 PA)이 실시한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이들이 작성한 CH205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 검진은 반드시 학교 입학 전 12 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 b. 같은 학교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유아원 학생들도 유치원 진학시 신규 CH205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 입학 시점에 만 5 세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만 5 세 생일 후 실시한 새로운 신체 검사에 따른 신규 CH205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 c. 학생이 건강검진 기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등교를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일 학생의 부모가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OSH 소속 학교 보건위가 뉴욕시 보건법 제 49.05 항에 의거해 학생을 검진하고 CH205 양식을 작성한다. 학부모는 이러한 건강 검진 사실을 반드시 통보받아야 하며, 검진 시 동석할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학부모 부재시에는 OSH 에서 지명한 보호자가 학생의 신체검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2. 특수 상황

a. 특수교육 평가

초기 특수교육 평가의 일환으로 DOE 학교나 특수교육 위원회(CSE)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학생의 1차 보육자가 지난 1년 사이에 실시된 건강 검진을 요약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CSE에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시력 및 청력검사 결과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OSH 소속 의사들이 실시하지 아니한다.

b. 학교 대항 스포츠

- i. 학교 대항 스포츠에 참여하기 전, 학생은 반드시 학교 체육 디렉터나 스포츠 코치에게 DOE 학교 대항 스포츠용 신체 검사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신체검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ii. 의사, 너스 프랙티셔너 또는 PA 는 반드시 학생을 검진하고, 이 학생이 공립 학교 체육 리그 규정에 의거해 훈련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안전하게 참가하는 데 지장이 될만한 신체 상태가 없다는 사실을 DOE 교내 스포츠 신체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매 학년도마다 새로운 검진이 요구된다.
- iii. 학생이 이러한 신체 검사의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OSH 소속 의사나 너스 프랙티셔너가 학교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부모는 반드시 건강력 양식을 작성하고 신체검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부모가 신체검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OSH 에서 지명한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 의사는 신체검사 결과를 반드시 DOE 에서 지정한 학교 대항 스포츠 신체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B. 신장 및 체중

학생들은 매 학년도마다 NYC FITNESSGRAM 측정 절차의 일환으로 반드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것은 학급 담임이나 체육교사가 실시하되 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정확한 측정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측정 결과는 반드시 체육교사 또는 학교장/대리인이 NYC FITNESSGRAM 온라인앱에 입력해야 한다. NYC FITNESSGRAM 결과는 각 학생의 체질량 지수(BMI)를 산출하는데 사용하며,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통보한다.

C. 시력 검사

DOE 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입학 육(6) 개월 이내에 반드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pre-k, 유치원 및 1, 3, 5학년에 반드시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만한 시력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력 검사를 실시하거나 학부모에게 시력검사를 강력히 권고할 수 있다.

1. 검사 실시

a. DOHMH 시력 검사

- i. DOHMH 시력검사 팀은 pre-k, 유치원 및 1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실시한다.
- ii. DOHMH 팀이 실시한 학생 검사 데이터는 매월 DOHMH 에서 ATS 에 업로드 한다.
- iii. DOHMH 는 검사를 받지 않은 pre-k, 유치원 및 1 학년 학생의 명단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b. 학교 검사

- i. 학교장은 3. 5 학년 및 DOHMH 로부터 시력 검사를 받지 않은 기타 모든 학생들이 시력검사를 하였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검사에서는 원시 및 근시를 모두 검사한다.
- ii. 학교장은 시력검사를 실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시력검사 팀을 지정한다.
- iii. 학교장은 학교 시력검사팀이 실시한 검사 결과가 ATS 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iv. OSH 에서는 각 학교 시력검사팀에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교직원을 연수하는데 조력한다.

2. 결과 통보

- a. 모든 시력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안내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반드시 학생이 안과 의사(검안의 또는 안과전문의)에게 가보아야 하며 의사는 DOHMH E-12S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담은 통지문이 제공되어야 한다.
- b. DOHMH에서는 자체 실시하는 시력 검사에 관한 학부모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장/대리인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력 검사에 관한 학부모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III. 필수 예방접종

뉴욕주 공중보건법(PHL) § 2164에서는 뉴욕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볼거리, 홍역, 디프테리아, 풍진, 수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백일해, 파상풍, 폐렴 및 B형 간염 백신을 필수 접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에서 7학년 및 1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A. 기록 보관

1. 예방접종 기록은 반드시 학교에 의해 ATS에 입력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생의 모든 필수 예방접종 기록을 누적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예방접종 증명, 예외인정 요청서 및 이러한 예외인정 요청의 결과까지 모두 포함된다.
2. 뉴욕시 예방접종 레지스트리(CIR)는 DOHMH의 예방접종 데이터 기록을 위한 공식 시스템이다. CIR은 매주 예방접종 데이터를 ATS로 이송한다.

B. 신규 입학생 대상 임시 예방접종 요건

1. 신규 입학생은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에 규정된 임시 예방접종 요건을 준수했다는 문서상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학교에 등록은 가능하나 등교할 수는 없다.
2. 학생이 등교에 필요한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보일로부터 14 역일 이내에 추가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등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정해진 14 역일 이내에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학교 등교금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학생은 등교는 허가되지 않으며, 본 조항에 의거하여 학생이 강제로 결석한 경우 출석코드 17을 입력해야 한다.
3. 학생이 예방접종을 하였다든 약간의 증거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타주 또는 타도시에서 온 학생에게 최대 30일까지(여기에는 III.B.2에 설명한 14 역일간의 유예기간도 포함) 등교를 허용할 수 있다.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로부터의 서면상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30 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에 절대 등교할 수 없다.

4. 매키니-벤토법 및 교육감 규정 A-780 에 의거하여, 임시 거주지 기거 학생(STH)은 예방접종 증명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즉시 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학부모가 이러한 서류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방접종 기록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학부모는 학교 STH 담당관으로부터 예약 없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클리닉을 추천받도록 한다.

C. 예방접종 일정

1. 18 세까지의 학생 예방접종 요건: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immunizations>.
2. 학생은 반드시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에서 권장한 아동 및 청소년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모든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해야만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아직 모든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아동들은 자기 나이에 맞는 ACIP 캐치업 접종 스케줄을 이행 중일 경우에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ATS 시스템은 임시 입학 허가를 받은 후 예방접종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기록에 자동적으로 경고표시(flag)를 하게 된다.
3. 상기 명시된 예방접종 요건은 18 세 이상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도 ACIP 에서 추천한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접종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D. 의료적 사유의 예방접종 요건 예외

PHL § 2164 및 뉴욕시 보건법에서는 의료적 사유의 예방접종 예외를 허용한다. 의료적 사유의 예외는 허용될 경우, 반드시 매 학년도 갱신해야 한다. 이러한 예외는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1년 미만) 허용된다. OSH에서는 승인 내용을 ATS에 입력한다.

1. 예외 요청: 의료적 사유 예외를 요청하려면 학부모는 반드시 뉴욕주 면허 소지 의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의료적 사유의 예방접종 예외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특정 백신(들)에 대한 정당한 의료적 부적응을 입증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학교 담당관은 작성된 요청 양식을 DOE 보로/뉴욕시 보건 디렉터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이곳에서는 해당 양식을 OSH 에 제출한다. OSH 중앙부서 보건과는 의료적 사유 예외 요청 양식을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학생들은 최초의 요청이 검토되는 동안 등교가 허락된다. 의료적 사유 예외의 최초 요청이 거부될 경우, 부모는 거부 통지문을 수신한지 14 역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까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생은 즉시 학교에 다닐 수 없다.

2. 재심 요청: 학부모는 거부 통지문 수신으로부터 14 역일 이내에 의료적 사유로 인한 예외에 관한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의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이는 OSH 의사가 검토한다. 학생들은 재심이 이뤄지는 동안 등교가 허락된다. 의료적 사유 예외 요청이 재차 거부될 경우, 부모는 2 차 거부 통지문을 수신한 지 14 역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까지 이의제기가 되지 않으면 재심이 거부되면 학생은 즉시 학교에 다닐 수 없다.
3. OSH 의료 디렉터 이의제기: 학부모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지 14 역일 이내에 의료적 사유 예외 요청 거부에 대한 이의를 학교에 제기할 수 있다. 학교 담당관은 이 이의제기를 OSH 의료 디렉터에게 이관하고, 의료 디렉터는 이것을 예방접종국과 상의하여 검토할 수 있다. 학생은 OSH 의료 디렉터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이의제기가 거부되면 이 학생들은 즉시 등교가 금지된다. 의료적 사유로 인한 예외 요청에 관하여 OSH 의료 디렉터가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다.

E. 뉴욕주 교육 커미셔너에게 이의제기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교가 금지되었거나 의료적 사유의 예방접종 요건 예외 요청이 거부된 학생의 부모는 OSH 의료 디렉터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교육 커미셔너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은 이러한 이의제기 과정 동안 학교에 등교할 수 없다.

F. 뉴욕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요건

뉴욕시 보건법 제 43 항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다니는 생후 6 개월에서 59 개월 사이 아동은 반드시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것을 요구한다.

G.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유행하는 동안의 예외

어느 학교에서 PHL § 2164에 명시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HMH에서는 해당 학교측에 예방접종에서 예외를 인정받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출석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출석 금지는 DOHMH에서 전염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지속된다.

IV. 투약 및 편의제공

A. 투약 및 처치

1. 학교나 기타 DOE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학생에게 투약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의료 전문가가 작성하고 학부모가 서명한 MAF 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의료적 처치는 학교 일과 중 및 DOE 프로그램과 활동 중에 시행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전문가가 작성하고 부모가 서명한 의료 처방 치료 제공 요청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의료 전문가란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 면허를 소지한 의사, 너스 프랙티셔너 또는 PA 를 말한다. 이러한 양식들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나 DOE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작성 후에는 OSH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MAF 의 내용에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 의료진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MAF 및/또는 의료 처방 치료 제공 요청서는 반드시 OSH 나 학교 간호사에게 매 학년도 시작 전, 또는 그 후 가능한 빨리 제출해야 한다.
2. 면허를 소지한 의료전문가만이 학생에게 투약이 허용되나, 에피네프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응급 구명용 약물은 예외이다. 모든 약물은 반드시 본래의 용기에 담긴 채 인편으로 직접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 배정된 간호사가 있는 경우, 간호사가 OSH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약을 보관하고 투약한다. 학교에 배정된 간호사가 없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이 교내 투약이 승인된 각 학생의 약물을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이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투약 일지(및 기타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다. 투약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요에 따라 약물에 접근하고 투약할 수 있다. 현재 MAF 상 “independent” 나 “supervised” 로 표기된 학생들은 직접 약을 소지하고 투약할 수 있다.
3. 학생이 투약으로 인하여 학교나 기타 DOE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장애가 없는 또래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또는 학생이 그 밖의 편의를 필요로 할 경우, 부모는 학교 섹션 504 코디네이터(모든 학교에 있음)에게 연락하여 교육감 규정 A-710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B. 비상 투약

1.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주사는 특정 알레르기 요소(음식이나 벌레 물림 등)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를 보일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응급 처치이다. OSH에서는 의무실에 에피네프린을 구비하여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을 때 의무실 직원이 투약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감 규정 A-715에 맞춰, OSH에서는 교사, 보조교사 및 MAF 상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사용이 명시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상대하는 기타 교직원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훈련받은 교직원은 MAF가 있는 학생들 가까이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가 보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2. 글루카곤

글루카곤은 혈중 글루코스 레벨을 높이기 위한 처방약으로서 당뇨학생들에게 심각한 저혈당(혈중 글루코스 수치가 낮음) 증상이 나타날 때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OSH에서는 당뇨 학생이 학생의 당뇨약 투여 양식(DMAF) 및/또는 504 계획에 따라 글루카곤을 투약할 수 있도록 교사, 보조교사 및 기타 교직원들을 훈련시킨다.

V. 비상 의료 상황

A. 비상 가정 연락 정보

비상 연락 정보는 반드시 모든 학생의 ATS 파일 및 일명 블루카드로 알려진 비상 가정 연락카드에 보관되어야 한다 (NYC 보건법 § 45.19 참고). 블루카드는 학생 입학 시 작성되어 매 학년도마다, 또는 필요할 때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비상 연락 정보를 갱신하는 것은 학부모 연락을 요하는 문제(예, 개인적인 의료적 문제)나 대규모 학교 비상상황(예, 대피) 모두에 중요하다. 갱신된 정보는 반드시 학교 간호사(있는 경우)에게도 알려야 한다.

B. 응급처치

1. 학생이 다치거나 아프게 되어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이 응급 의료 조치를 주선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한다. 교내에서 실시되는 응급처치는 학생의 즉각적인 구급치료에만 국한된다. 응급처치를 실시함에 있어 감염 가능한 질병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표준적이고 상식적인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2.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보다 더 심각한 응급상황인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911 에 전화해야 한다.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OSH 클리닉 직원이나 기타 상황에 대처 중인 직원은 반드시 911 에 전화하고 그 후 즉시 학교장/대리인에게 통지한다.
3. 학생을 위해 911 을 부른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911 에 전화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4. 교직원이 학부모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출동한 911 대원들은 관련 정보를 DOE 직원이나 기타 교직원들로부터 입수하고 해당 학생이 응급 의료 처치 및/또는 이송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고 학부모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교직원이 반드시 학생과 동행한다.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한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직원은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지시에 따른다.

C. 자동 심장 제세동기(AED)

1. 모든 학교에는 최소 1 대 이상의 AED 를 구비,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AED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이 가능하도록 훈련 받은 사람이 모든 학교 주최 또는 후원 행사나 학교에서 승인한 교과 또는 과외 행사나 활동 시 반드시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는 장소나 시간에 관계 없이 학교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모든 체육행사에 AED 를 비치하고 훈련받은 AED/CPR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학에 AED 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립학교 시설과 교직원들은 “공중 심장 제세동기 제공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PHL 제 30 (a), (b), (c)항에 의거한 요건과 제한, 책임이 있다. 학교장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교내에서 AED 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것의 사용법을 알고 있으며 CPR 이 가능한 직원을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 시 상주시킬 책임이 있다. OSH 직원(AED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교육청과 계약을 맺은)은 AED 배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AED 작동유무를 검사하며, 교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3. AED 요건에 관한 상세 정보: <http://www.p12.nysed.gov/sss/schoolhealth/schoolhealthservices/Article19Sections.html>.

D. 심폐 소생 거부(“DNR”) 명령

부모는 자녀의 학교장에게 병원 외에서의 DNR 명령을 교육청이 수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본 요청을 OSH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OSH에서는 교육청 법률 서비스 담당실과 협의하여 결정을 내린 후 학교장 및 기타 관련 교직원에게 이 내용을 알린다.

VI. 학교 기반 보건 서비스

A. OSH 의무실 시설

1. OSH 의무실 직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OSH 의무실에서 작성된 의료 기록은 OSH 자산이다.
2. OSH 서비스 수립을 위한 절차

DOE에서는 다음과 같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풀타임 간호사를 1인씩 배정한다:

- 전 학년도 두 번째 달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최소 200 명의 학생이 등록된 곳.
- OSH 보로 간호 디렉터에게 학교 간호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곳.
- 학교 간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무실을 갖춘 곳.

3. OSH 보건직원을 위한 의무실 시설

학교 의무실은 NYC 보건법 § 49.07에 맞게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한다.

B. 학교 보건 센터

1. 교내 보건센터(SBHC)는 부모가 1 차적, 예방차원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SBHC에서는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나 응급처치 같은 일상적인 학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SBHC의 의료 기록은 Article 28 제공자로서의 SBHC 소유이다. SBHC에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은 뉴욕주 보건부 (NYSDOH)이다.

2. SBHC 설립을 위한 절차 및 시설 요건

- a. SBHC 설치 요청을 OSH에 보낸다. 요청이 접수되면 OSH와 Office of Space Planning (OSP)에서는 합동으로 해당 장소를 심사하고 SBHC를 만들만한 공간이 있는지 결정한다.
- b. SBHC용 공간이 있다고 결정되면, 해당 장소는 OSH와 학교 건설부(SCA)에서 공동으로 심사한다.
- c. 어떤 장소가 OSH, OSP, SCA에 의해 심사되고 승인되면, OSP에서 의향서(LOI)를 발급하여 PHL Article 28 스폰서가 NYSDOH의 아동 및 청소년 보건국으로 발송한다. 어느 학교의 어느 SBHC도 NYSDOH의 아동 및 청소년 보건국과 OSH의 승인 이전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다. 설립 지원서 사본 1부를 반드시 OSH에 다음 주소로 보낸다: Office of School Health/ NYCDOHMH/ Adolescent Health Unit, 1 Court Square, 20th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ATT: AHU Director.

C. SBHC - 치과

1. SBHC - 치과 (SBHC-D) 프로그램은 고정된 또는 이동식 환경에서 치과 서비스를 받도록 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SBHC-D 프로그램은 예방 케어를 제공하고 대다수 프로그램에서 회복적 처치도 제공한다. SBHC-D 의료기록은 Article 28 제공자로서 SBHC-D의 소유이다. NYSDOH는 모든 SBHC-D 프로그램에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2. SBHC-D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절차 및 시설 요건
 - a. SBHC-D 설치 요청을 OSH에 보낸다. 요청이 접수되면 OSH와 OSP에서는 합동으로 해당 장소를 심사하고 SBHC-D를 만들만한 공간이 있는지 결정한다.
 - b. SBHC-D용 공간이 있다고 결정되면, 해당 장소는 OSH와 SCA에서 공동으로 심사한다.

- c. 어떤 장소가 OSH, OSP, SCA 에 의해 심사되고 승인되면, OSP 에서 의향서(LOI)를 발급하여 PHL Article 28 스폰서가 NYSDOH 의 아동 및 청소년 보건국으로 발송한다.
- d. 어느 학교의 어느 SBHC-D 도 NYSDOH 의 아동 및 청소년 보건국과 OSH 의 승인 이전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다. 설립 지원서 사본 1 부를 반드시 OSH 에 다음 주소로 보낸다:
NYCDOHMH.DENTAL@Health.NYC.Gov

VII. 학교 보건 프로젝트

학교 보건 프로그램은 보건 서비스나 건강 홍보 활동 등을 제공하는 학교 보건 프로젝트로 보강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제안서는 교육청 직원, 기타 행정부처, 또는 민간 단체 등이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특수 기본 검사, 보건 정보나 팜플렛, 기타 유사 자료 배포, 또는 학생 기록 또는 질문지를 통한 데이터 수집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

OSH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프로젝트를 검토 후 승인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연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육청 산하 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가이드라인에 관한 추가 정보는 DOE의 Research and Policy Support Group,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에 요청한다.

프로젝트 종료 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VIII. 예외

본 규정 전체, 또는 규정의 일부는 법으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교육감이 NYC 학교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IX. 문의처

본 규정서 관련 문의:

Office of School Health – Office of Health Services

N.Y.C. Department of Education

28-11 Queens Plaza North – Room 402

LIC, NY 11101

전화: 718-391-8388

팩스: 718-391-8128